-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 국가인권위원회

70 주년 세계인권선언

수신 박경석 귀하
(경유)
제목 결정문(긴급구제 조치) 송부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거부 긴급구제 권고’ 결정문을 송부합니다.

붙임: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거부 긴급구제 권고 결정문 1부 (정본 별도 송부). 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애차별조사 1과장 2018.8.9.

행정사무관 **황성룡** 직무대리 **정호균**

협조자

시행 장애차별조사1과-244 (2018. 8. 9.) 접수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 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968 팩스번호 02-2125-0924 / hwang16@nhrc.go.kr / 비공개(6)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상 임 위 원 회

## 결 정

사 건 18진정0612700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거부

진 정 인 1.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2.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피 해 자 김선심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

###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및 강서구청장에게,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12년 동안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뇌병변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2018. 8. 2.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없는 야간의 폭염 속에서 고열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24시간 간병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진단서를 강서구 가양3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진정인은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생명권 침해라며 긴급구제를 요청하였다.

## 2. 서울시 강서구청장의 주장

활동지원서비스 판정은 해당 장애인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경우 인정조사 점수는 438점으로 1등급이다. 피해자는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1등급 기준에 따라서 복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401시간(기본급여 118시간, 추가급여 283시간)과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197시간을 포함하여 월 총 598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현 기준 상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다. 피해자는 국비로 지급되는 보건복지부의 추가급여 항목 상 '1인가구', '학교생활' 항목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복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문('지자체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시행계획 작성 안내')을 통해 인정조사 점수 44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상자를 협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요청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최소 인정점수를 400점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경우 제반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차의 추진은 서울특별시의 각 구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보건복지부의 협조 등이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발음이 어렵고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거동 못하는 뇌병변2급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3명이 교대로 진정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4일(월, 화, 금, 토) 동안에는 피해자와 24시간 함께 생활하고 3일 ( 수, 목, 일) 동안은 출·퇴근을 하고 있어, 피해자는 이 기간 동안 20:00~21:00부터 다음날 08:00~09:00까지는 혼자 생활한다.

나. 활동지원사가 야간에 함께 있지 않는 이유는 국가지원 및 서울특별시 지원의 활동지원서비스 총시간이 598시간으로, 하루 24시간 지원받는 경우 한 달에 필요한 720시간에 비하여 122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 피해자는 올여름 폭염기 동안 활동지원사가 퇴근하면 에어컨이 없는 가운데 외부인 침입이나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등을 우려하여 문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닫고 선풍기도 켜지 못한 상태로 취침을 하였다.

라. 2018. 8. 2. 오전 피해자는 고열과 가슴의 답답함을 느껴 출근한 활동지원사와 함께 집 부근 병원(C&J연합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체온은 38.6도였다.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액 및 항생제를 처방했으며, 큰 병원에서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계속 치료 중이다.

마. 같은 날 피해자와 활동지원사는 진단서를 가지고 강서구 가양3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상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5. 판단

### 가. 긴급구제요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장애시민단체계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한 그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지자체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마저 관련규정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통한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 확

대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넓히고는 있으나, 현재의 재난적 폭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뇌병변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국가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재난적 폭염 상황에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열사병 등으로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

재난적 폭염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긴급히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열사병 등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건강 및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고 그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을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헌법」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및 강서구청장에게 피해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는 것 등에 관해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8. 8. 9.

위원장 이성호 이성호

위 원 정상환 정상환

위 원 최혜리 최혜리

위 원 정문자 정문자

〈별지〉

##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6조(긴급구제조치)**

① 진정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 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원 등은 즉시 그 사유 및 필요한 긴급구제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③ 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에 긴급구제조치통보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위 정본입니다.

2018. 8. 1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정 수 민 (인)